

# 석좌연구위원 운영규칙

제 정 2023. 12. 29.

개 정 2024. 02. 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석좌연구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좌연구위원이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 있는 인사를 연구원 내·외에서 선임하여 연구업무 및 지역발전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석좌연구위원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8.>

- ① 각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개정 2024.2.8.>
- ② 각 전문분야 활동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연구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 <개정 2024.2.8.>
- ③ 기타 원장이 이와 동등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무)** ①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 및 연구과제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하거나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외협력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 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3년 이내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임용 상한 연령은 70세 까지로 하며, 임용 기간 중 70세가 되면 자동 계약이 종료된다.

**제6조(임용)** ① 석좌연구위원은 공개채용 후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2024.2.8.>

② 석좌연구위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서식 1>의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의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기간 및 심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공고기간은 10일 이상(초일은 불산입)으로 하고 접수기간은 5일 이상(공휴일 제외)으

로 하며 응시자가 분야별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2. 시험방법은 서류심사(100%)로 <별표>서류심사표에 의하고 최종합격자는 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3.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참여시킨다.

4. 서류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심사항목 중 채용분야 적합성 항목 점수(1순위), 자질과 비전 항목 점수(2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5. 기타 석좌연구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채용계획에 의한다.

④ 채용공고 시 지원자는 <별지서식 2> 추천서를 첨부한다.

⑤ 석좌연구위원 활용인원은 총 10명 이내로 한다.

⑥ 석좌연구위원의 임용은 <별지서식 4> 위촉계약서에 의한다. <신설 2024.2.8.>

**제7조(재임용)** ① 제5조에 의한 재임용 시 부서장은 임용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서식 3>의 재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

**제8조(근무형태)** 비상근으로 하되, 수행업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처우)** ① 석좌연구위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금은 월3,000,000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연구장려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2. 연구실 및 그 밖에 필요한 비품

**제10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반출 또는 사용, 발표할 수 없다.

**제11조(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2023.12.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석좌연구위원 활용계획서

활용부서					
사업내용	○ (사업명) ○ (기간) ○ (사업 세부내용)				
채용 인원(명)		채용 기간		고용 형태	
채용사유					
직종 및 자격	○ (직종) ○ (자격기준)				
담당업무					
소요예산					
기타사항					

20   년   월   일

소속 부서장:                   (인)

전북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3>

## 석좌연구위원 재임용 계획서

석좌연구위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임용기간
재임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추진업무 내용</li><li>○ 재임용 사유</li><li>○ 재임용 기간</li></ul>		

20    년    월    일

소속 부서장:                      (인)

전북연구원장 귀하

# 위 축 계 약 서

(석좌연구위원)

계 약 자 : 전북연구원장

계약상대자 :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 급	계약기간	계약금액 (연구장려금)	업무내용
석좌연구위원			

2. 계약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되, 수행업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원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구원에서 부여한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행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지급된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조기완료, 또는 해촉 후 무보수 수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5. 위촉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합의에 의한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소)  
                  (성명)                   (인)

계약상대자 : (주소)  
                  (성명)                   (인)

<별표>

# 서류심사표

심사대상자

모집분야		성명		접수번호	
------	--	----	--	------	--

심사평점

- 평 점 : 4개항목 100점 만점(평균 60점 이상 합격)
- 심사내용 : 심사 대상자의 교육사항, 자기소개, 경력사항,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무수행의 적합여부 심사
- 득점 란에 항목별 점수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배점	득 점				
		합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및 득점	(100)	25~23	22~19	18~15	14~11	10~7
채용분야 적합성 (경력사항, 교육사항 등)	25					
자질과 비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25					
채용분야 연관성 (경력사항, 직무수행계획서 등)	25					
실현가능성 (직무수행계획서)	25					

심사의견

20 . . .

심사자 : (인)

전북연구원장 귀하